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사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